
더기쁨요양원 입소안내



○ 인사말

“기관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더기쁨 요양원에서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 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 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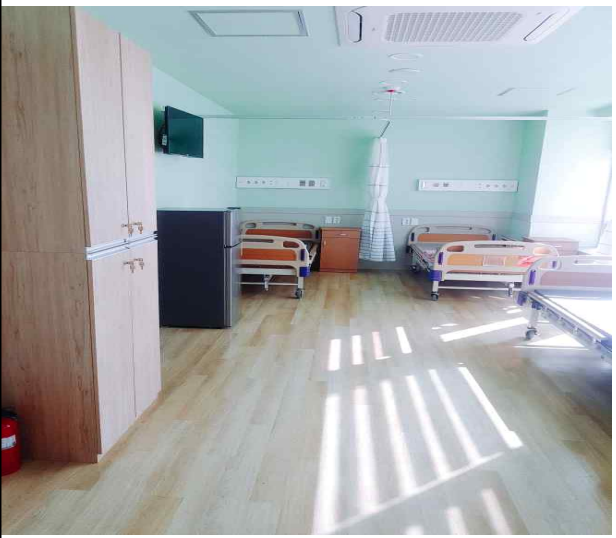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 요양원 소개

기관명	더기쁨요양원	설치일자	2017.11.24
급여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29명
대표자	하경숙	협력의료	효성요양병원
홈페이지	http://www.hsgp.co.kr/	전화번호	031-235-8636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63 6층(진안동, 우성메디프랜드)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3,300 원 (1식)	
	상급침실 비용	1인실 15,000원 (1박 기준)	
	간식비	1,100원	
시설 규모	건물면적 663㎡		



구분	침실	사무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의료간호	물리(작업)	프로그램	식당/조리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세탁장
시설	29	0	0	0	1	0	1	0	5	1	0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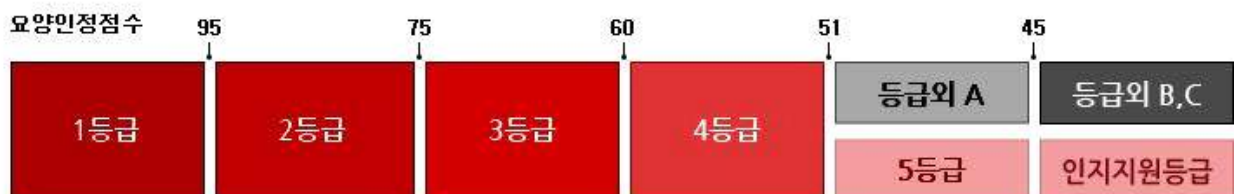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 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 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 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급여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1. 세면도움	1) 세면도움
	2. 구강청결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1) 면도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갈아입기도움	1) 옷갈아입기
	6. 신체청결도움	1) 몸씻기 도움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도움	1) 일반식사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8.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 도움	1) 변기사용 2) 침상배변·배뇨 3) 기저귀 교환 4)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10. 이동 도움	1) 침상내 이동 2) 휠체어 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 기능 유지 증진	1) 관절구축(오그라들)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 도움 4) 경구약물 복용 도움
	12. 산책(외출) 동행	1) 산책(외출) 동행

기능회복훈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 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2. 신체 기능훈련·기본 동작 훈련· 일상 생활동작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5. 물리치료	1) 온냉열치료 2) 전기치료 3) 운동치료
	6. 작업치료	1) 언어치료 2) 작업치료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1. 인지관리지원	1. 인지관리지원
	2. 의사소통 도움	2. 의사소통 도움

1. 관찰 및 측정	1) 건강상태 확인	(1) 활력 징후 측정 (2) 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3) 혈당 측정
2. 건강 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경구 투약 (4) 비위관·위관 투약 (5)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6) 인슐린 주사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소독관리 (4)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관절오그라들 예방	(1)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2)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5) 치매돌봄 정보제공	(1) 치매 약물 관리
	6) 인지훈련	(1) 인지 기능 평가 (2) 인지 기능 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7) 의료기관 의뢰 등	(1) 촉탁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3. 간호관리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확인 (2) 위루관(PEG-tube) 관리 (3)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관장 (4) 장루관리 (5) 회음부 간호
	4) 통증관리	(1) 통증 사정 (2) 온·냉요법 (3) 이완요법 (4) 약물요법
	5) 호흡기 간호	(1) 가슴기 (2) 산소요법 (3) 흡인간호 (4) 기관 절개관 관리
	6) 구강간호	(1) 구강간호
	7) 당뇨발 관리	(1) 당뇨 발 관리 (2) 상처 관리
	8) 투석관리	(1) 복막투석 관리 (2) 혈액투석 관리
4. 응급 서비스	1) 응급간호	(1) 질식시 응급대처 (2) 경련시 응급대처 (3) 화상시 응급대처 (4) 낙상시 응급대처 (5)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6)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5. 임종관리	1) 임종간호	(1) 임종간호

● 일일 생활시간표

시간	내용
06:00~07:00	기상 및 개인 위생 (세안/옷입기/양치) 및 아침 식사 준비
07:00~08:30	아침 체조 및 아침 식사
8:30~10:00	기본 건강체크, 투약
10:30~12:00	목욕 및 개인별 프로그램 활동 (자체 프로그램)
12:00~13:00	점심식사 및 개인위생 (손씻기/양치) 투약
13:00~14:00	개인 활동 (편백 찜질/개인 운동/개인 산책/외출)
14:00~17:00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외부 프로그램)및 간식
17:00~18:00	신체 기능 운동 휴식 및 말벗 지원
18:00~20:00	개인 위생 (손씻기/양치) 투약
20:00~21:00	자유 시간(음악, 말벗, TV)
21:00	취침
22:00~06:00	야간 점검

○ 프로그램 일정

월	화	수	목	금
인지A 11:00-11:50 (체조시간포함)	여가A 11:00-11:50 (체조시간포함)	인지B 11:00-11:50 (체조시간포함)	여가B 11:00-11:50 (체조시간포함)	인지C 11:00-11:50 (체조시간포함)
맞춤인지(음악) 14:00-15:00		맞춤인지(교구) 14:00-15:00		
신체기능A 17:00-17:30				신체기능B 17:00-17:30
▶ 어버이날 행사 및 송년 행사 진행/보호자 참여 프로그램/지역사회외부연계프로그램 등				

● (2025. 1월 기준 요양원 현황)

○ 종사자 근무체계

-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1명	2명	1명	-	10명	0명	-	-

- 주/야간, 평/휴일 직원인력

주간 평일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1명	2명 또는 1명	2명 또는 1명	-	3명 또는 4명	0명	-	-

주간 휴일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0명	1명 또는 2명	1명 또는 0명	-	3명/4명	0명	-	-

야간 평일/ 휴일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0명	0명	0명	-	3명 또는 4명	0명	-	-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

(단위 : 원)

등급	수가	본인부담 (20%)
1	90,450	18,090
2	83,910	16,782
3,4,5	79,240	15,848

○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	20%
기초 수급 권자	0%
장기요양본인부담금감경 (본인부담금 100 분에 60 / 40)	감경 8%, 12%

○ 계약의사

초진	재진
18,410	13,160

○ 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 내용	계약기간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한화손해보험)	2024/11/29~2025/11/29

● 기관의 특성 및 우수사례



1. 촉탁 의사 정기진료

월 2회 촉탁의 방문 진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2. 노인성 질환에 맞는 개인별 맞춤식 케어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맞는 간호 처치를 합니다.

3.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어르신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4. 영양과 건강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식사 제공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식 식단이 제공되며, 매일 신선한 식자재로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합니다.

5. 신속한 응급상황 연계서비스

건물내에 위치한 요양병원과 협력하여 어르신의 일반질환 발생 시 또는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대형병원 인근 위치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응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대형병원으로 신속한 후송을 지원하여 협력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 입소자 수준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월 8회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인지·여가 수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유지와 향상에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1.면회 안내

면회 수칙 안내	
사전 예약제(보호자만 가능) / 2명 이하로 제한	
시간	15분
생활 시설 면회	상담실에서 대면 면회 실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필수/열 체크 필수
이용자 자원봉사자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후 손 소독 필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존중

저희 더기쁨요양원에서는 수급자와 직원 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더기쁨 요양원에서는 수급자와 직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수급자와 직원을 보호하는 존중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 더기쁨요양원의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2. 반말, 욕설, 성희롱,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더기쁨요양원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종사자와 보호자가 모두 함께 지키는
우리 기관 인권 지키기

노인학대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Silver Smile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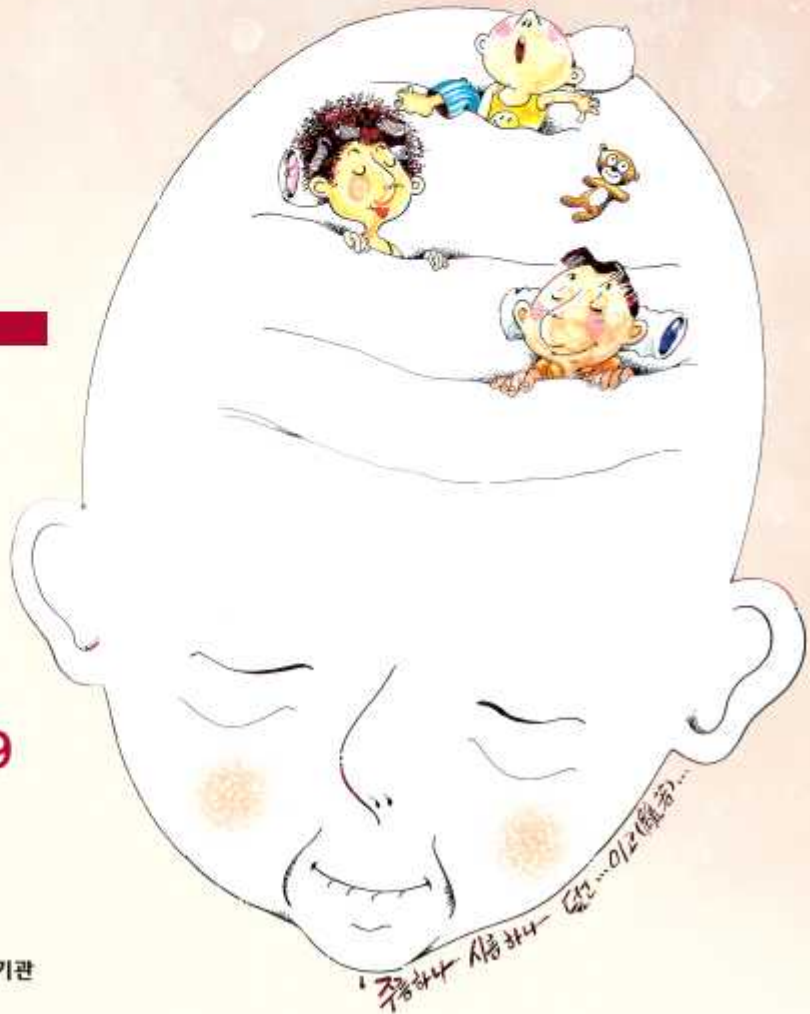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름,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